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 공고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결과

설치예정지역	총괄국명	위탁예정자	설치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춘천	최근희	춘천시 동면 가산로 82 (現 춘천동면우체국)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 할인), 증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개시일 전까지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필요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위탁계약의 체결

가. 일 시 : '25. 11. 28.(금) 14:00 ~

나. 계약장소 :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 '26. 1. 5. ~ '29. 1. 4.(3년)

라. 계약시 지참물 : 주민등록증, 도장, 사진 1매(3×4cm)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 납부금액 : 800만 원

※ 취급국FC 계약 체결시 별도 보증보험증서 제출 필요(별도 안내)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 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필수업무(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모집 및 수급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8,000	6,000	4,000	2,000	800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다.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 1) 현금납부와 재정보증서(1명)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 2) 보증보험증서과 재정보증서(1명)을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보증금 납부 방법>

① 현금납부

- 수탁예정자는 보증금을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 총괄우체국장은 보증금을 우체국 정기예금계좌에 위탁
 - * 위탁계좌 : 00우체국장(총괄국)
- 총괄우체국장은 보증금납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보증금납부서 및 통장 사본을 지방우정청에 제출

② **신원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원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증서를 해당 총괄국에 제출
 - * 보험계약자 : 수탁자 / 피보험자 : 강원지방우정청장
 - * 보험기간 : 위탁계약기간(3년)
- 총괄우체국장은 보험증서 사본을 지방우정청에 제출(원본은 총괄국 보관)

③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와 보증인의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앞,뒤)을 해당 총괄우체국에 제출
- 재산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액 증빙서류**
- 연대보증인 자격 :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소유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제출)
- 총괄우체국장은 보증서,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지방우정청에 제출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3-749-2125) 또는 춘천우체국 지원과(033-259-6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1] 보증금 납부확인서 (총괄국 → 지방우정청)

보증금 납부확인서

용 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이행				
위탁대상자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기간	2014.00.00 ~ 2017.00.00 (3년)		위탁업무	(o)기본형, ()환대체형	
보증 금액	00,000천원		산출근거	(o)신규 ()갱신 3년간 월평균 현금 세입액	
납부 방법	납부(보증)금액	상세 내역			
①현금 예치	20,000천원	계좌 번호	000000-00-00000000(3년)		
		위탁계약 해지 시 정기예금 지급			
②보증보험증권	20,000천원	증권 번호	000000000000(AA보증보험)		
		만료 일자	2016.00.00		
③재정보증인	20,000천원	확인일자	보증 가능 금액		확인자
			김00	이00	
		14. . .	35,000	10,000	
		14. . .			
합 계	60,000천원				

* **재정보증인 보증가능금액 산출** : 재정보증인의 재산권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공동 소유인 경우 소유 지분을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토지의 경우 해당지번의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지번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호수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 출력 →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율만 계산하고), (등기부등본 읍지의 유효한 근저당 설정이 있는 경우 채권채고액을 차감) → 보증 가능 금액 기재

※ 첨부서류 목록 : ①보증금납부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정기예금 증서사본, ②보증보험증권 사본, ③ 재정보증서(1), 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1명), 재산세납입증명서(1), 보증인이 재정보증용으로 제시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1매), 해당 부동산 공시 가격 인터넷 조회 출력물(각 1매)

위와 같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0우체국장

○○지방우정청장 귀하

[양식 2] 현금 납부서(총괄국 → 지방우정청)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6.>

보증금 납부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보증금액	일금 : 원정(W)
위탁계약 기간	부터 까지

위 금액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본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금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예금금액	예금기간

위와 같이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인)

[양식 3] 재정보증서 제출 시(총괄국 → 지방우정청)

재 정보증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정보증금액		원(금 원정)		

위 사람이 우편취급국 수탁자로서 향후 2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당해 수탁자가 변상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
등이 공동하여 변상할 것을 서약하고 재정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illegible]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